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의 필요성

김문철* · 이준규**

<요 약>

2009년부터 기업의 선택에 따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이 적용되기 시작하며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이 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IFRS를 적용할 경우 법인의 세무조정과 조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와 이에 따라 법인세법의 개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현행 회계기준과 IFRS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요약정리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법인세법 개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항목별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IFRS를 적용할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제도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거나 적게 손금에 산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기업은 세무 상의 손금산입혜택을 적용받는 대신 IFRS를 위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IFRS를 적용하여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을 받는 대신 세무 상의 손금산입혜택을 포기하여야 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IFRS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법상의 결산조정제도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못하는 경우는 영업권상각, 손상차손, 자산재평가, 리스자산의 평가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세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결산조정사항을 신고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손상차손이나 평가차손을 감가상각의 의제로 규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종전에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따라 회계기준에서와 같이 손익금의 가액 및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IFRS의 도입에 따라 법인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리스의 구분, 손상차손의 환입, 공사진행기준 적용시 공사원가, 금융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행정해석, 합병 및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재고자산의 평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제어> 국제회계기준, 세무조정, 결산조정, IFRS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kimc@khu.ac.kr, 02-961-0469, 교신저자, 본 연구를 위해 2007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년 지원을 받았음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juneqlee@khu.ac.kr, 02-961-9178, 제1저자

I. 서 론

자본시장이 국제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목적으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100여국이 이를 회계기준으로 채택하였거나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FRS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여 회계기준서를 제정하여 오다가 2007년 3월 15일 한국회계기준원과 IFRS 도입준비단에 의하여 IFRS 도입로드맵이 공표되었으며 기업의 선택에 따라 2009년부터 IFRS를 적용하도록 하되,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들이 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다만, 금융기관은 IFRS의 적용시기를 선택할 수 없고 2011년부터 적용하여야 하며, 비상장법인은 적용여부가 기업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나라에서 IFRS를 전면 도입하게 된 이유는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국제신인도 제고에 있다고 할 수 있다(김문철 외 2006, 오준환 외 2006). 이러한 기대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같이 기업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에서 기인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기업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회계정보는 기업의 외부투자자에게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목적으로도 활용되는데 납세액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은 그 목적이 다르며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이 달라진다고 하여 반드시 납세자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거나 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장부를 기초로 세무조정을 통하여 사업연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이 달라진다고 하여도 사업연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단지 세무조정이 달라질 뿐이다. 그러나 특정 손금의 경우 회계장부에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결산조정항목이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손금한도보다 적게 손금에 산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IFRS가 도입되는 경우 이렇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과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산입혜택 중 어느 한편의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새로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법인세법의 규정 중 기업회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손익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거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IFRS의 도입에 따라 이러한 규정들이 개정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IFRS가 도입되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인 법인의 세무조정과 조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와 이에 따라 법인세법의 개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II장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IFRS의 주요차이를 분석하였고, III장에서는 IFRS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IV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II.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IFRS의 주요차이 분석

본 장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이하 'K-GAAP'이라고 함)과 IFRS간에 존재하는 주요 차이점을 살펴본다. K-GAAP과 IFRS간의 모든 차이점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는 것은 본 논문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각 기준서 별로 주요 회계처리에 초점을 두고 비교 분석을 행한다. 특히, 해당 국제회계기준서의 적용대상이 특정 산업에 국한되는 경우나 또는 재무정보의 공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¹⁾ 또한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IAS 8), 이연법인세(IAS 12), 외화자산(IAS 21), 지분법(IAS 28), 조인트벤처투자(IAS 31), 충당부채, 우발채무 및 우발자산(IAS 37),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및 중단영업(IFRS 5) 등 K-GAAP와 IFRS간에 차이가 있더라도 현재와 같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기업회계와 세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비교분석을 생략하였다.

1. 재무제표 작성 및 표시

IAS 1에서는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IAS 1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으로 구성된다. 이를 K-GAAP과 비교해 보면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 개념의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되었으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재무제표에서 제외되고 있다. IAS 7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흐름표에 관한 규정 역시 현금흐름표에 표시되는 항목의 분류와 관련하여 K-GAAP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며 기본적인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건설계약

건설계약에 대한 정의는 IAS 11과 K-GAAP 간에 별 차이가 없으나 건설계약에 대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IFRS에서는 IAS 11의 적용범위를 건설계약의 정의를 만족하는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K-GAAP에서는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와 같은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계약에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K-GAAP하에서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인식이 허용되었던 예약매출의 경우에는 IAS 18에 따라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의 인식을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인식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IFRS에서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해

1) 1) 현재 발표되어 있는 37개의 기준서 중에서 IAS 7(현금흐름표), IAS 10(보고기간후 사건), IAS 20(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IAS 24(특수관계자공시), IAS 26(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IAS 32(금융상품: 표시), IAS 33(주당이익), IAS 34(중간재무보고), IAS 41(농림어업), IFRS 1(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IFRS 4(보험계약), IFRS 6(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IFRS 7(금융상품: 공시), IFRS 8(영업부문) 등은 제외하였다.

K-GAAP에서는 공사계약금액에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동 공사원가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 한다. 따라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 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 즉 원가법에 따른 진행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K-GAAP하의 공사원가와 큰 차이가 없겠으나 만일 진행률을 수행한 공사의 측량이나 계약 공사의 물리적 완성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의 금액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한국회계기준원 2007).

또한 추정공사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IFRS에서는 미청구공사나 초과청구공사 산정시 상계하도록 하는 반면에 K-GAAP에서는 공사손실부채라는 별도의 부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수익인식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IAS 18과 K-GAAP간에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의 인식조건과 관련하여 K-GAAP에서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IFRS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고 되어 있어 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에 있어서 K-GAAP에서 더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IFRS하에서의 수익의 인식이 K-GAAP하에서 보다 더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4. 차입원가 자본화

IAS 23이 2007년에 개정되기 전에는 차입원가(금융비용)를 원칙적으로 즉시비용화처리하고 대체적인 방법으로 자본화방법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007년 개정된 IAS 23은 미국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즉시비용화방법을 폐지하고 자본화방법만을 인정하고 있다. K-GAAP에서는 개정 전 IAS 23에 기초하여 금융비용을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본화대상적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여 자본화 회계처리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IFRS 도입 전에 차입원가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오던 회사의 경우에는 총자산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동시에 향후 차입원가를 자본화하기 위하여 자본화가능원가를 계산하거나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구분, 자본화율 등을 계산하는 작업이 요구되므로 실무적인 부담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본화대상자산(적격자산)을 정의함에 있어서 IAS 23에서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에 K-GAAP에서는 자본화대상자산은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5. 투자부동산

IAS 40은 투자부동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한 별도의 기준서이다. K-GAAP에 이에 해당하는 별도

의 기준서는 없다. K-GAAP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부동산의 범위와 관련된 차이이다. IFRS에서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K-GAAP에서는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유형자산 또는 보험업의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투자부동산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IFRS에서는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모형 중 선택하여 회사가 보유한 투자부동산 모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K-GAAP에서는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각후원가로,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IFRS에서는 운용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대해, 해당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이를 공정가치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K-GAAP에서는 운용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운용리스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자산인식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6. 주식기준보상

IFRS 2와 K-GAAP간에 규정 내용상 차이점은 거의 없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가 비교적 최근에 제정되면서 IFRS의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인 결과이다. 다만 비상장회사의 현금결제형주식보상거래와 관련된 부채에 대해서 K-GAAP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하지만 내재가치에 의한 평가도 인정하고 있는 반면 IFRS에서는 이 경우에도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만을 인정하고 있다.

7.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IAS 2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K-GAAP과 차이를 보인다. 첫째, IFRS에서는 표준원가법의 적용결과인 표준원가가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표준원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가관리 차원에서 표준원가법을 사용하는 기업이 공표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조정하여야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반해 K-GAAP에서는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한 기업도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 가액은 실제원가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둘째, 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후입선출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제 원가흐름을 신뢰성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기말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고자산이 오래 전에 취득한 단가에 의해 표시됨으로써 재무정보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K-GAAP에서는 후입선출법을 허용하고 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과 관련된 IAS 16과 K-GAAP 간의 중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IFRS에서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

반면 K-GAAP에서는 원가모형(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만 인정된다. 둘째, IFRS에서는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K-GAAP에 따르면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의무는 없으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IFRS에서는 유형자산을 교환거래를 통해 취득한 경우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거나, 교환대상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K-GAAP에서는 교환거래를 동종자산간 교환거래와 이종자산간 교환거래로 나누고 이종자산 간의 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다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할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 가능함) 동종자산 간의 교환에서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취득자산의 원가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9. 리스

리스회계와 관련하여 IAS 17과 K-GAAP 간에 큰 차이는 별로 없다. 이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를 제정시 IAS 17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금융리스의 분류조건을 제시함에 있어서 K-GAAP에 의하면 금융리스분류의 양적 판단지침(예: 내용연수 75%, 공정가치의 90%)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IFRS에서는 금융리스분류의 양적 판단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경영자의 실질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IFRS가 도입되는 경우 실무상 금융리스분류와 관련된 주관적 판단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삼정회계법인 2007).

10. 종업원급여

IAS 19에서는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함에 있어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래의 퇴직급여를 추정할 때 미래의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며, 시장수익률에 기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한다. 반면 K-GAAP에서는 청산가치 개념에 기초하여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상의 차이로 인해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인 ‘미래임금상승률’과 ‘할인율’의 차이에 따라 보험수리적으로 측정되는 퇴직급여채무가 현행 퇴직급여충당금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래임금상승률이 할인율보다 큰 경우 퇴직급여채무가 현행보다 증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 퇴직급여채무가 현행보다 감소하게 된다. 또한 보험수리적 가정이 바뀔 때 따라 퇴직급여채무가 변동하고 이에 따라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IFRS에 따른 퇴직급여채무 측정방법이 이론적으로 더 부합되는 반면에 퇴직급여채무의 측정이 많은 주관적인 가정에 근거하며 그에 따라 추정금액의 변동도 더 커지게 된다. 이러한 차이 외에도 IFRS에서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채무를 인식하는 반면 K-GAAP에 따르면, 기업의 퇴직금지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1년 미만 근속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급여 지급권이 없

으므로 관련 채무를 인식하지 않는다.

11. 손상차손

IASB는 IAS 36을 발표하여 손상차손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회계처리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손상차손에 대한 별도로 제정된 회계기준서는 없으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기준서, 기업인수및합병준칙 등 해당 개별기준서나 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IAS 36에는 자산손상의 정의가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데 반해 K-GAAP에서는 해당 개별 기준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손상차손에 대한 두 기준간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IFRS에서는 매 결산기말에 자산의 손상징후 유무를 검토하고 만일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자산손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K-GAAP에서는 손상 징후 발생시에 손상차손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매 회계연도말에 자산손상 징후유무를 검토하라는 의무규정은 없다²⁾. 둘째, 두 기준 간에 손상차손의 측정방법과 관련된 차이가 존재한다. IFRS에서는 동 기준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인식단계와 측정단계를 구분하지 않으며,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만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K-GAAP에서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에 대해서는 인식단계와 측정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식단계에서는 장부금액이 해당 유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할인되지 않은 미래현금흐름총액’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인식단계에서 손상차손이 인식된다면 측정단계에서는 손상차손을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다. 셋째, IFRS에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 먼저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해야 하며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고 그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IFRS에서는 ‘현금창출단위’에 기초한 손상차손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K-GAAP에는 자산손상과 관련하여 현금창출단위 수준에서의 손상차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넷째, IFRS에서는 영업권의 자산손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매 회계연도말과 손상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K-GAAP에서 영업권은 20년 이내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동시에 매 회계연도말에 손상차손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업권에 대한 상각비용은 더 이상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게 된다. 또한 K-GAAP에서는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검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 무형자산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IAS 38과 K-GAAP 간에는 꽤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적용범위에 있

2) 단, 영업권, 미사용 또는 20년 초과 무형자산 및 처분 또는 폐기에정의 지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말에 자산손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어서 IFRS의 경우 IFRS 6에서 광물자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으므로 IAS 38은 광업권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반해 K-GAAP에서는 광업권을 무형자산기준서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IFRS에서는 무형자산을 정의할 때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K-GAAP에서는 무형자산의 정의에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과 같이 사용 용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무형자산의 정의에 사용 용도가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FRS의 정의가 보다 개념적이고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무형자산의 정의 중에 하나가 식별가능성인데 IFRS에서는 자산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식별가능한 경우로 명확하게 포함시키고 있는데 반해 K-GAAP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넷째, IFRS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관계'에 대한 교환을 통해 취득되거나 개별 취득된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관계'는 그러한 항목이 분리가능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그러한 고객관계로부터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보고 무형자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K-GAAP에서는 비계약적 고객관계의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효익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사업결합에 의하여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은 무형자산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효익이 매수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고 보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 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해서 별도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K-GAAP에서는 사업결합을 통해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유입가능성요건이 항상 만족된다고 보는 규정은 없다.³⁾ 여섯째, IFRS에서는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를 갖는 무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indefinite)인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내용연수동안 상각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상각을 하지 않고 대신에 정기적인 손상검사(impairment test)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K-GAAP에서는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IFRS에서는 무형자산을 취득한 후 측정함에 있어서 원가법 또는 재평가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K-GAAP에서는 원가법만을 규정하고 있다. 여덟째, IFRS에서는 교환거래의 결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K-GAAP에서는 이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이 공정가치가 불확실하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동종자산과의 교환인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IFRS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한 반면 K-GAAP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결합시 무형자산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영업권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13.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IAS 39는 금융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 기준서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모든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포괄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에 대응되는 K-GAAP에는 별도의 기준서가 없고 유가증권, 전환증권, 채권채무조정, 채권 등의 양도할인에 대한 회계처리,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등 여러 기준서나 해석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는 IFRS와 K-GAAP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FRS에서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및 만기보유금융자산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의 부채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반해 K-GAAP에서는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IFRS에서 규정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중에서 단기매매증권은 동일하게 포함되나 당기손익인식지정 금융상품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여금 및 수취채권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IFRS에서 규정하는 당기손익인식지정 금융상품은 공정가치의 변동을 곧바로 당기 손익에 반영하게 된다.⁴⁾ 둘째, IFRS에서는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의 경우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외에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K-GAAP에서는 매매일 회계처리방법만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금융자산의 제거와 관련하여 IFRS에서는 금융자산의 제거시점, 제거조건 및 적용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과 효익 이전, 통제권의 보유 및 지속적 관여 개념을 각각 구분하고, 그 적용순서와 회계처리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GAAP에서는 통제권의 상실 여부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의 제거를 결정하고 있다. 즉 위험과 효익의 이전이나 지속적 관여라는 개념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각 기준간의 적용 우선순서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넷째, IFRS에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서 다른 분류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K-GAAP에서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었던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다섯째, IFRS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조건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이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부터 기인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역사적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변경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계약조건의 실질적 변경여부를 판단하고, 만일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부채를 제거하여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새로운 부채를 조건변경시점의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K-GAAP에서는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채권·채무조정에서 발생한 계약조건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된 미래현금흐름을 채무발생시점의 역사적 유효이자율로 할인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IFRS에서는 금융자산을 최초로 취득

4)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지정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는데서 발생하는 인식과 측정시의 불일치(회계불일치)를 지정을 통하여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간의 회계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또는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이사회, 대표이사 등 주요경영진에게 공정가치기준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의 경우로 한정된다.

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만일 거래가격과 공정가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초일손익(day 1 profit/loss)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K-GAAP에서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가 취득 시점의 유가증권 공정가치와 취득부대비용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명확하게 거래초일손익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일종의 거래초일손실 개념은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IFRS에서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예: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의 인식은 손상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K-GAAP에서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정을 하여 이를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K-GAAP 하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예상손실을 대손으로 잡을 수 있다. 또한 IFRS에서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지분상품의 손상차손은 환입할 수 없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할 수 없다.⁵⁾ 이에 반해 K-GAAP에서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지분상품의 손상차손환입을 손상차손차감전 장부금액을 한도로 인정하고 있으며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경우에도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기이익에 반영한다. 여덟째, IFRS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미래결제조건이다. K-GAAP에서는 미래결제조건 대신에 차액결제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결제조건이 차액결제가 아닌 경우에는 양 기준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아홉째, IFRS에서는 모든 전환증권의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요건을 충족하면 그 권리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하여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K-GAAP에서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외하고는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열 번째, IFRS에 따르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관련 손익은 당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예: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에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만일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등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은 당해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예: 감가상각비나 매출원가가 인식되는 기간)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거나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을 제거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원가 또는 장부금액에 포함(장부금액조정법)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K-GAAP에 의하면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자산의 취득 또는 부채의 발생인 경우에 한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을 해당 예상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열한 번째, IFRS에서는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데 반해 K-GAAP에서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만을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IFRS에서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서 이자율스왑 계약금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최초 스왑계약체결시 스왑의 공정가치가 영(0)인 경우에 위험회피가 완전한 것으로 보는 ‘간편법’의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데 반해 K-GAAP에서는 ‘간편법’이 허용되고 있다.

5) 단, 매도가능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손상차손환입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할 수 있다.

14. 사업결합

IFRS 3에서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결합과 관련된 두 회계기준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IFRS에서는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⁶⁾ 이에 반해 현행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에 지배·종속관계 성립한 이후의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은 경제적 실체의 변경이 없으므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IFRS에서는 모든 사업결합에 대하여 매수법만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K-GAAP에서는 매수법뿐만 아니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결합의 경우에 지분통합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셋째, IFRS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매 회계연도마다 또는 손상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K-GAAP에서는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매 결산기에 손상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IFRS에서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이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와 사업결합원가를 일단 다시 평가하고 이러한 재평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은 초과분은 즉시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K-GAAP에서는 이 초과분을 부의영업권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그 발생원인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 규정한다. 즉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미래의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은 그 손실이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하고 기타의 부의 영업권은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고 초과액은 매수일에 이익으로 인식한다. 다섯째, IFRS에서는 우발매수대가가 있을 때 그러한 발생가능성이 높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우발매수대가를 사업결합원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K-GAAP에서는 우발매수대가가 있을 때 그 발생이 확실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결합원가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IFRS에서는 사업결합의 결과 취득자가 사업결합 전에는 인식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예: 피취득자의 미래 과세소득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취득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만, 이를 영업권 또는 사업결합초과분을 결정하는 데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K-GAAP에서는 이와 같이 인식하게 된 이연법인세자산을 사업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권이나 부의영업권의 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IFRS에서는 연속적인 주식매입에 의해 사업결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각 거래와 관련한 영업권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단계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즉 둘 이상의 교환거래로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사업결합원가는 각 개별 거래 원가의 총합으로 계산한다. 또한 각 교환거래일의 각 개별 투자 원가와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취득자 지분을 비교하여 각 단계마다 영업권을 결정하고 이들의 합을

6)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2008년 초에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기준서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IASB 홈페이지 'common control transactions' 참조).

취득일 현재 영업권 금액으로 결정하는 단계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K-GAAP에서는 사업결합원가를 취득일 직전 취득자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취득일에 지급된 사업결합대가의 공정가치의 합으로 측정하고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취득자 지분 해당액과 비교하여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 가액을 결정하는 일괄취득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 끝으로, IFRS에서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또는 사업결합원가가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사업결합이 일어난 회계기간 말까지 이를 잠정적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취득일부터 12개월 이내 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영업권 또는 초과분의 금액이 수정된다. 그리고 이 기간 후에 이루어지는 조정은 우발매수대가와 관련된 사업결합원가의 조정, 최초회계처리 완료 후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의 경우, 그리고 오류수정인 경우에만 소급조정하여 영업권 또는 초과분을 수정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된다. 이에 반해 K-GAAP에서는 매수일 이후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추가적 인식, 또는 매수일에 인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의 오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시점에서 당해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수정한다. 만일 이러한 수정이 매수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발생하게 되면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동 회계연도말 경과 후에 발생하면 발생한 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III. IFRS의 적용에 따른 법인세법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결산조정제도

가. 의의

세무조정은 법인이 회계장부를 결산한 후 계산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수익과 익금, 비용과 손금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가감조정하는 것인데 그 조정방법에 따라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된다. 신고조정이란 기업회계 장부상의 손익과 세법상의 손익금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장부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신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세무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결산조정은 장부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무조정이라고 하면 이 신고조정만을 의미하기도 한다(이준규, p. 171).

결산조정이란 회계장부상의 손익과 차이가 있는 손익금을 결산에 반영하여야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하는 세무조정방법이다. 결산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해당 손금 또는 익금을 장부에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고 공표하는 재무제표의 작성시 반영되도록 함을 말한다. 결산조정은 장부에 증감기록이 계속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과세당국의 확인 또는 감시가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세무행

7) 개정된 IFRS 3에서는 단계적 취득시 일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취득일에 피취득회사 전체의 공정가치와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정편의를 위한 제도이다(이준규, p. 170). 결산조정제도가 행정편의를 위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폐지하여야 할 제도로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결산조정제도로 인하여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산조정으로 인한 행정비용의 절약과 기업의 납세순응비용을 비교하여 그 제도의 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결산조정은 장부상 손익금의 계상액과 세법상 손익금의 범위액 중 적은 금액만을 손익금에 산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계장부상 계상한 손익보다 많은 금액이 법인세법상의 손익금으로 인정될 때 그 손익금이 결산조정사항이라면 회계장부상 손익과의 차액을 장부에 더 계상하여야만 해당 차액이 손익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회계장부상 계상한 손익보다 적은 금액이 법인세법상의 손익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미 법인세법상의 손익금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므로 회계장부상 손익과의 차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익금 불산입하게 된다(이준규, p. 170).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인데 법인이 회계장부상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상의 한도를 초과하여 계상하는 경우와 미달하게 계상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100만원인데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상 12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액은 100만원이며 초과계상액 20만원은 과세표준신고시 손금불산입(신고조정)하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회계장부상 손금계상액이 법인세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한도의 손금산입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100만원인데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상 8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회계장부상 실제 계상액 80만원만 손금산입되며 법인세법상 손금한도에 미달하게 계상한 금액 20만원을 과세표준신고시 추가로 손금산입(신고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회계장부상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상의 손금한도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 세법상 손금한도의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한도에 미달하게 계상한 금액(이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로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당초 장부에 계상한 80만원이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이라면 20만원의 추가계상이 회계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즉 결산조정이 강제되는 비용의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법상의 손금한도보다 적다면 법인은 법인세법상 손금한도까지 비용으로 계상하여 최대한으로 손금산입을 하는 대신 회계기준위배로 인한 감사의견에의 악영향을 감수하든지 아니면 회계기준에 따른 금액만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사업연도소득의 증가로 인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⁸⁾하든지 양자택일하여야 한다.

	과대계상사례	과소계상사례
법인세법상 손금한도	100만원	100만원
회계장부상 계상액	120만원	80만원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액	100만원	80만원

8) 해당 연도에는 손금불산입됨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납부 하지만 장래에 해당 자산이 처분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추가로 손금산입되어 법인세를 덜 납부하게 되므로 영구적으로 법인세를 더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나. 결산조정항목

법인세법에서 결산조정사항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를 손익금으로 계상한 때 손익금에 산입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경정청구는 이미 결산이 확정된 이후에 하는 것이고 결산이 확정되어 재무제표를 공시한 이후에는 이를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준규, p. 171). 이러한 결산조정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이 이외의 항목은 신고조정이 가능하다.

(1)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고정자산(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범위의 금액은 신고조정이 가능하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2) 준비금과 충당금의 손금산입

일반적으로 세법상의 준비금과 충당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세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대손충당금(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신용보증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인세법 제35조 제1항)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대신 신고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①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 ② 외부회계감사대상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적립하는 경우(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 ③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대손충당금의 설정방법에 있어서 기업회계에 의하면 보충법으로 처리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총액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법인세법 제34조 제4항 후단)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경우 당해 차감한 금액이 결산조정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손금에 산입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차감한 금액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이다.

(3)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손금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 그러나 다음의 사유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규정(법인세법 제62조 제3항 제1호)하고 있어 그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① 상법, 어음법, 수표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③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④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4) 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세법에서는 평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손익을 손익금에 산입하며 이는 장부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결산조정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①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 ② 채고자산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평가차손(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호 및 제74조 제1항 제2호)
- ③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에 대한 평가차손익(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76조)
- ④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차손익(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

(5) 자산의 손상차손

다음과 같은 자산의 영구적인 가치하락(permanent impairment)으로 손상차손이 발생하여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 ① 채고자산으로서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 ②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및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 ③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 ④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

(6) 귀속시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손익금

손금 또는 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법인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방법에 대하여는 장부에 손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① 회수약정기일 도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의 장기할부거래손익: 법인이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인도기준에 따라 손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 ②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용역제공손익: 건설,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인도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제3항).
- ③ 이자 및 임대료: 이자 및 할인액과 자산에 대한 임대료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 또는 실제 지급일로 하는 것이 원칙(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및 제71조 제1항).
- ④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는 명목가액으로 계상하고 이를 기초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현재가치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으로 보아 감가상각하거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여 각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2. 항목별 문제점

가. 유형자산 : 재평가

IFRS에 따라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원가법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K-GAAP 및 법인세법과 차이가 발생한다. 즉 K-GAAP과 법인세법에서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행 법인세법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IFRS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 ① 유형자산을 최초로 재평가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 장부에 자본으로 처리하며 세무상으로는 해당 평가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⁹⁾하는 동시에 동액만큼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 ② 유형자산을 최초로 재평가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하며 세무상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 ③ 최초로 재평가한 이후 다시 재평가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 장부상 과거 평가손실로 인식한 금액까지 이익으로 인식하고 초과금액은 자본으로 인식하며, 세무상으로는 이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익금산입하는 동시에 동액만큼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 ④ 최초로 재평가한 이후 다시 재평가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 장부상 과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과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 비용은 비용으로 인식하며, 세무상으로는 상계액을 손금산입하는 동시에 동액만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고 비용인식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 ⑤ 재평가한 유형자산의 처분: 장부상 자본으로 계상된 평가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어 손익이 인식되지 않으며 세무조정은 필요없다.

위와 같이 장부상 IFRS에 따라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하고 세무조정한 경우 세무상 손금산입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재평가한 결과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이익의 제거에 대하여는 신고조정이 가능하고 자산가액의 증가로 장부상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감가상각범위액 보다 클 것이므로 신고조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이 손금에 산입되며 법인세법에 따라 원가법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할 때 조세부담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평가한 결과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의 제거 자체는 신고조정에 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산가액의 감소로 장부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감가상각범위액 보다 적을 것이므로 그 차액은 결산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으며 법인세법에 따라 원가법을 적용한 경우보다 조세부

9) 평가이익을 수익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자본의 증가로 처리하여 장부상 이미 유보처리되었으므로 소득처분은 필요하지 아니하나, 실무상 기타 또는 잉여금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답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법인은 재평가법의 적용을 회피하게 될 것이며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제도가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IFRS에 따라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을 법인세법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법인세법에서 원가법 이외에 재평가법을 인정한다면, 세무조정이 필요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이나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지고, 이는 과세형평을 해칠 여지가 있으며, 이익은 계상하지 않고 비용만을 계상하는 IFRS의 입장으로 인하여 재평가법이 세무상 유리하게 되어 조세가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재평가법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손익귀속 : 중소기업의 장기할부판매

K-GAAP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할부금 회수기일에 인식할 수 있으며(회계기준서 14.11), 법인세법에서는 결산조정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자산판매 또는 양도에 대하여 회수약정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할부조건거래에 대하여 인도기준 대신 회수약정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하여도 세무상 인정이 되면서 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IFRS 도입 후 중소기업에 적용될 회계기준에서 회수약정기일도래기준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회수약정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하여 세무상 인도기준에 의하는 것 보다 과세이연의 이익을 향유하는 대신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재무제표를 작성·공표하거나 아니면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공표하는 대신 세무상의 과세이연이익을 포기하여야 하는 선택에 놓이게 된다.

다. 리스

리스에 관하여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금융리스자산을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도록 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금융리스의 요건을 리스회계기준서에서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리스회계기준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회계기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리스에 관한 법인세법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IFRS에 따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세무조정의 필요성이나 결산조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자비용계산의 간편법 허용 등과 같이 현행 리스회계기준서에는 규정이 없지만 IFRS에서 규정하는 것들이 법인세법에서 허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조건 중 현행 리스회계기준서에서의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75% 이상인 경우”와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90% 이상인 경우”를 IFRS에서는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와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부분”이나 “대부분”과 같이 불명확한 개념을 법인세법에서 수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와 과세 당국간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리스에 관한 모든 것을 IFRS에 따라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라. 종업원급여 및 퇴직급여

K-GAAP과 법인세법에서는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계상할 퇴직금 부채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급여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상하고 이를 기초로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IFRS에서는 미래에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미래임금상승률, 퇴사율, 사망율 등의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IFRS에 적합하게 개정하면 세무조정은 필요없게 될 수 있으나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퇴직급여를 추정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할 경우 가정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법인세법을 IFRS와 동일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IFRS를 적용한다면 손금불산입(IFRS에 따른 비용계상액이 더 큰 경우) 또는 손금산입(IFRS에 따른 비용계상액이 더 적은 경우)¹⁰⁾의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IFRS에서 연간연금원가의 하나로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이 포함되며,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의 차이는 보험수리적 손익으로 처리하는데 법인세법에서 기대수익을 기초로 손익금이 산입되도록 규정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IFRS를 적용하는 경우 기대수익을 계상하는 때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였다가 실제수익과의 차이를 보험수리적 손익으로 처리하는 때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첫째, 보험수리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한 경우에는 당초에 계상한 기대수익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수리적 손익을 범위접근법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상각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계상한 기대수익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동시에 이연하는 보험수리적 손익 상당액을 손금산입(보험수리적 손실) 또는 익금산입(보험수리적 이익)하여 유보로 처분하였다가 보험수리적 손익을 상각하는 때 손금불산입(보험수리적 손실) 또는 익금불산입(보험수리적 이익)하고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셋째, 보험수리적 손익을 인식손익표에 인식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에 계상한 기대수익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장부상 이미 유보처리(이익잉여금)되었으므로 소득처분을 하지 않거나 기타로 처분하여야 한다.

마. 외화환산

현행 법인세법상 외화평가손익은 손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K-GAAP과

10)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IFRS의 외화평가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화평가손익을 세무조정에 있어서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예외적으로 특정 금융기관¹¹⁾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스왑 및 통화선도에 대하여는 외화평가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 및 제4호, 동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제2항), 이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IFRS에서 비화폐성 항목에 대하여는 역사적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비화폐성 항목 중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도록 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외화평가손실이 발생하여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이 취득원가를 기초로 한 장부가액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법인세법상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되어 유형자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결산조정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바. 자산손상

IFRS에서는 자산손상을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데 비하여 K-GAAP에서는 자산별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앞서 II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손상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그 범위를 좁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와 관련하여 손상차손 및 그 환입이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FRS에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만, 법인세법상의 손상차손에는 해당하지 않거나¹²⁾ 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에서 손상차손으로 보는 금액¹³⁾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면 된다. 그러나 장부상 손상차손을 계상하여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을 감액하고 이를 기초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자산재평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업에게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혜택 중 하나를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K-GAAP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IFRS가 K-GAAP에서 보다 자산손상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법인세법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K-GAAP에서는 장부에 손상차손을 계상한 후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

1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12) 예를 들면 대출채권,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이 예에 해당한다(IAS 39 & 3).

13) 개별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IFRS에서는 현금창출단위를 대상으로 손상차손을 구하고 이를 개별 자산에 배분하도록 하는데 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현금창출단위에 의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규정이 없다.

과하는 경우에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 장부가액의 감가상각후 잔액을 한도로 그 초과액을 환입하여 이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IFRS에서는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은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는데 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손상차손의 환입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장부에 손상차손의 환입을 이익으로 계상하면 세무조정상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손상차손의 환입을 이익으로 계상함에 따라 증가하는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입액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손상차손은 발생 즉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비하여 자산손상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처분될 때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데 이는 손실과 이익의 손익금 산입시기를 비대칭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

사. 무형자산

IFRS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하여도 자산재평가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자산재평가법에 대하여는 유형자산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또한 IFRS와 K-GAAP에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내용연수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각비계상액이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이 손금에 산입되지만,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산재평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업에게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혜택 중 하나를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회계기준에 따라 채권 및 채무의 재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 또는 손실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9 외). 따라서 금융부채의 조건변경으로 인한 채무조정이익 등의 계산에 있어서 K-GAAP과 IFRS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상되는 손익을 모두 손금 또는 익금에 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면 된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기업회계준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K-GAAP에 따라 손금과 익금을 산입하도록 하는 행정해석의 경우 IFRS가 K-GAAP과 다르다면 법인세법의 해석이 IFRS와 다를 수 있으며 IFRS에 따라 회계처리할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되며, 기업회계준중의 원칙에 입각한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첫째, IFRS에서 금융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해당 자산을 제거하는 요건이 K-GAAP과 달라짐에 따라 K-GAAP하에서 매각거래로 인정되던 금융자산의 양도가 IFRS 적용시 차입거래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행정해석(법인 46012-131, 2000. 1. 14.)은 채권만기일에 금융기관에 할인한 어음의 할인료가 K-GAAP에 따라 매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IFRS에서 이를 차입거래로 보게 되는 경우 세무조정¹⁴⁾이 필요하게 되고 기업회계의 준중과 배치되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K-GAAP에서 정형화된 거래의 손익 인식은 매매일(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IFRS에서는 매매일 기준 회계처리방법과 결제일 기준 회계처리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K-GAAP을 기초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손익금에 산입하도록 한 행정해석(재정부 법인 46012-71, 2001. 3. 28.)은 IFRS에 따라 결제일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되고 기업회계의 존중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 사업결합

(1) 영업권

영업권에 대하여 K-GAAP에서는 20년 이내의 내용연수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9)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5년의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장부상 5년 또는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상각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세법상의 상각범위액을 전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으나 IFRS에서는 영업권의 상각을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혜택과 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재무제표의 작성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포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IFRS에 따라 영업권에 대하여 자산손상차손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차손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면서 상각범위가 줄어들어 조세부담이 증가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산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어느 하나를 포기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이월결손금의 승계

K-GAAP에서와 달리 IFRS에서는 모든 사업결합에 대하여 매수법을 적용하여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되는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도록 함에 따라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에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되는 법인의 자산을 장부금액으로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례조치에 대하여는 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법인세법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금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도록 하며, 분할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후 소멸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자산을 장부금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은 이를 분할신설법인 등의 결손금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한다(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48조의 2 제1항).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장부금액 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4) 매각거래로 볼 경우 매각 시점에 손익이 전부 인식되지만, 차입거래의 경우 기간경과에 따라 손익이 인식되므로 손익금의 귀속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업으로 하여금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공제혜택과 IFRS에 따른 회계처리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차. 재고자산의 평가

K-GAAP과 법인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후입선출법을 허용(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다목)하고 있으나 IFRS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상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선입선출법(상품부동산의 경우 개별법, 상품유가증권의 경우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세무상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및 제75조 제2항).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한 경우, 장부상 재고자산을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면 IFRS에 위배하게 되고, 상품부동산 이외의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상품유가증권의 경우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면 세무조정이 필요없으며, 그 이외에 IFRS에서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면 선입선출법(상품부동산의 경우 개별법, 상품유가증권의 경우 총평균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세무상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려면 IFRS에서 인정되지 않는 후입선출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카. 과세표준 신고서류

K-GAAP에서는 주재무제표를 개별 법인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식으로 하고 있고 법인세법에서는 이 들 개별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및 제4항). 그러나 IFRS에서는 주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이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명칭 변경하고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대신 포괄손익계산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IFRS가 도입될 경우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타. 비상장법인

IFRS를 상장법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확정되었으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상장법인과 같이 IFRS를 적용하게 할 지 아니면 별도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할지에 대하여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며 별도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현행 K-GAAP을 기초로 할 지 아니면 IFRS를 단순화하여 적용하도록 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다. 별도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현행 법인세법에서 인용하는 기업회계기준은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말하는 지 명확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3. 문제점의 해결방안

일반적으로는 IFRS가 도입되는 경우 K-GAAP과 그 내용에 있어서 달라졌다고 하여도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IFRS의 도입이 기업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FRS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도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K-GAAP에 따라 손익금의 가액과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의 규정은 일반적으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지급배당소득공제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한다든지(법인세법 제51조의 2), 접대비의 한도의 계산기준, 공동사업의 공동경비 배분기준 또는 용역제공에 대한 부당행위판단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 또는 제89조)에는 IFRS가 K-GAAP과 다르다고 하여도 IFRS에 따른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IFRS에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IFRS에 따라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가. 결산조정제도의 개선

결산조정제도는 법인세법상의 손금범위액이 회계기준에 의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혜택과 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재무제표의 작성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포기하도록 선택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 있다. 이렇게 법인세법의 규정이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회계처리를 조건으로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회계처리가 왜곡되거나 회계기준에 따른 적정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양자 모두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과 회계기준에 따른 적정한 회계처리는 서로 대체적인 것이 아니며 기업으로 하여금 양자를 동시에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결산조정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결산조정제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편의를 위한 제도라는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폐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결산조정제도로 인하여 행정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면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결산조정제도의 폐지는 행정편의로 인한 행정비용의 절감도와 기업이 손금산입을 받지 못하거나 적정한 감사의견을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는 별도의 연구주제가 될 것이며 본 논문에서는 결산조정제도의 전면 폐지보다는 결산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 본 IFRS 도입시 세무상의 손금한도까지 손금에 산입하거나 법인세법상의 익금귀속시

기를 적용하기 위하여 결산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기업에게 선택을 강요하게 되는 경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재평가법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손실이 발생한 이후의 감가상각
- ②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것 제외)을 계상한 이후의 감가상각
- ③ 비화폐성 유형자산에 대한 외화평가손실을 계상한 이후의 감가상각
- ④ 영업권상각
- ⑤ 인도기준 대신 회수약정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하여 산입하는 손익금

첫째, 재평가법에 따른 평가손실, 자산손상차손 또는 외화평가손실을 계상하여 자산의 가액이 감액된 이후의 감가상각이 세무상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문제점은 해당 평가손실, 손상차손 또는 외화평가손실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상각의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면 해결될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상각의 의제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한 규정이다. 즉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동 손비를 자산에 계상하였다가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손비계상액 전액이 손금불산입되지 않고 증가한 것으로 보는 자산가액으로 인한 상각범위액의 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손금불산입되며, 동 금액은 상각부인액으로서 이월된다. 또한 이후의 사업연도에서는 해당 손비계상액이 자산가액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산정하고 전기로부터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장부에 계상된 감가상각비에 추가하여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것이다. 즉시상각의 의제는 취득 또는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지만 IFRS가 도입되는 경우 세무조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평가나 손상으로 인한 자산감액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도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취득 등을 위한 지출의 비용처리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즉시상각의 의제를 적용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기업은 법인세법상의 상각범위액과 관계없이 IFRS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IFRS에서 영업권에 대하여 상각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법인세법상의 영업권상각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는 우선 법인세법상 영업권상각을 계속 허용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계속 허용할 것이라면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도 상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정도 필요없고 결산조정으로 인한 문제점도 없어지게 되지만, 영업권에 대하여 상각을 허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¹⁵⁾에서 그 당위성을 가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갑자기 IFRS에 따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계속 상각을 허용한다고 전제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15) K-GAAP하에서도 영업권에 대하여 비교적 짧은 상각기간(5년)을 허용하고 있어 기업활동의 지원 성격을 가지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과세당국의 행정 및 감시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면 신고조정으로 영업권상각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외부회계감사대상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에서와 같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손금산입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도기준 대신 회수약정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하여 손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의 규정은 인도기준을 적용할 경우 회수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IFRS에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 때 결산조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고조정으로 회수약정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과세당국의 행정 및 감시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면 인도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와의 차액을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IFRS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

K-GAAP에 의한 손익의 금액과 시기를 법인세법에서 수용하여 익금과 손금의 가액 및 귀속시기를 K-GAAP과 일치하도록 한 경우에는 IFRS의 도입으로 K-GAAP과 달라지는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IFRS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스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따라 법인세법이 기업회계를 수용한 것으로 IFRS가 도입됨에 따라 IFRS에 따라 법인세법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IFRS의 리스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중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조건으로 “상당부분”이나 “대부분”과 같이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법인세법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부분은 형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별도의 명확한 구분기준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손상차손에 대하여 신고조정이 가능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손상차손의 환입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에서 그 계상을 인정하는 손상차손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상품의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입각하여 K-GAAP에 따라 손금과 익금을 산입하도록 하는 행정해석¹⁶⁾의 경우 IFRS의 도입과 함께 IFRS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의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보험수리적 가정에 입각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IFRS의 규정은 가정의 불확실한 요소로 인하여 법인세법에서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따라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넷째, 합병과 분할에 있어서 장부금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어 공제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상의 규정은

16) 금융자산의 양도를 매각거래로 보는 구분기준 또는 정형화된 거래의 손익인식 등에 관한 행정해석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으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IFRS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합병과 분할에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기 위한 장부금액승계조건의 취지는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이익을 계상¹⁷⁾한 후 이를 이월결손금과 상계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유지하면서 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는 IFRS에 따라 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하되,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로 인하여 세무상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 금액은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다섯째,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K-GAAP과 법인세법에서 후입선출법을 허용하고 있는데 IFRS가 도입되는 경우 후입선출법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세무상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는 IFRS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법인세법상 후입선출법을 계속 허용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에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다양하게 인정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므로 IFRS에서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법인세법에서도 굳이 이를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며, 오히려 과세이연의 방편으로 악용되어 온 측면도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도 후입선출법을 허용하는 평가방법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만, 종전에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던 법인에 대하여는 과세이연의 효과가 일시에 과세소득으로 실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과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과세유예를 유지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건설계약에서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K-GAAP에서는 실제공사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데 비하여 IFRS에서는 공사원가도 진행률에 의한 금액을 각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함에 따라 법인세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인세법상 공사진행기준은 K-GAAP를 존중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IFRS가 적용될 경우 공사원가를 진행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과세표준 신고서류에 재무제표를 첨부하도록 한 법인세법의 규정은 재무제표의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개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IFRS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한 것을 법인세법에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법인세법은 납세의무를 개별 법인에게 지우고 이에 따라 개별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무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연결납세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재무제표를 기초로 개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연결조정을 통하여 연결세액을 산정하는 방식¹⁸⁾이 될 것이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종전과 같이 개별재무제표의 첨부를 필요로 한다. 다만, 자본변동표가 매 사업연도에 작성되는 상황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계속 제출하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대신 자본변동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과세표준 신고시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할

17) 평가이익 계상액에 상당하는 가액은 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며 이는 감가상각 등을 통하여 미래의 손금이 된다.

18) 미국과 일본 등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할 것.

재무제표는 납세의무자인 개별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로 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의 필요

비상장기업에게 IFRS를 적용하는 대신 별도의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하도록 한다면 법인세법에서 인용하는 기업회계기준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여 법인세법에서 이를 규정화 한 것은 IFRS와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별도의 기업회계기준 중 어느 쪽을 적용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인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선택적용되고 2011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에게 적용되는 IFRS와 현행 회계기준인 K-GAAP와의 차이 중 법인세법과 납세자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법인세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IFRS를 적용할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제도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거나 적게 손금에 산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기업은 세무 상의 손금산입혜택을 적용받는 대신 IFRS를 위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IFRS를 적용하여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을 받는 대신 세무 상의 손금산입혜택을 포기하여야 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IFRS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법상의 결산조정제도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못하는 경우는 영업권상각, 손상차손, 자산재평가, 리스자산의 평가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세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결산조정사항을 신고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손상차손이나 평가차손을 감가상각의 의제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종전에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따라 회계기준에서와 같이 손익금의 가액 및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IFRS의 도입에 따라 법인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리스의 구분, 손상차손의 환입, 공사진행기준 적용시 공사원가, 금융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행정해석, 합병 및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재고자산의 평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 김문철 · 안영균 · 정혜영. 2006. “국제회계기준의 전면수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15권 제3호: 165-194.
- 삼정회계법인. 2007. 『국제회계기준 실무해설』. (주)한국맥그로힐.
- 오준환 · 김호중 · 김성남. 2006. “국제회계기준의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수용 수준, 대상 및 시기의 결정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15권 제2호: 31-58.
- 이준규. 2008. 『세법개론』. (주)영화조세통람.
- 한국회계기준원. 2007.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한국-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와 영향분석』.
- IASB, 2008. "common control transactions". [http://www.iasb.org/\(생략\)/Common+Control+Transactions.htm](http://www.iasb.org/(생략)/Common+Control+Transactions.htm).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Necessity of Amendment of Corporate Income Tax Law for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Moonchul Kim* · Juneq Lee**

〈Abstract〉

This study reviews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which will be introduced on or after 2009 and the current version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Standards in Korea(K-GAAP), analyzes several tax issues arising from the introduction of IFRS, and suggests remedies for those issues.

First, there are several expense items that firms should reflect on their books in order to make tax-deductible. If there exist differences on recognition criteria of these expenses between corporate income tax and IFRS, firms face tradeoffs between tax savings and avoidance of violating IFRS. If they decide to follow income tax law, they can get tax savings but, resulting in violation of IFRS. These examples include goodwill amortization, impairment losses, asset revaluation, valuation of leased asset. In order to resolve these potential problems, we need to revise tax law so that the differences are adjusted through tax reconciliations or impairment losses or valuation losses are treated as deemed depreciations.

In addition, the expenses which have been treated in the same way as GAAP in recognition criteria and measurement methods, we need to revise corporate income tax law to eliminate tax law-IFRS differences. These items include classification of lease, recovery of impairment loss, contract costs under the percentage of completion method, interpretations on recognition and measurement of financial instruments, succession of loss carryforward under merger and split-up and valuation of inventories.

〈Key word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tax reconciliation, tax deductions allowed by book entry

* Professor, School of Accounting and Taxation, Kyung Hee University.

** Professor, School of Law, Kyung Hee University.